

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22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5. 11(수)
제 출 자 : 박종욱 대표의원
찬 성 자 : 이범연, 함명섭
박찬원, 장문혁
임영순 의원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6년 5월 16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「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」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심 사 계 획

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사안건

-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

3. 활동기간

- 2016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- 이범연 의원, 함명섭 의원, 박찬원 의원, 박종욱 의원, 장문혁 의원
임영순 의원

5. 운영계획

일시	차수	내 용	비고
2016. 5.16 (월)	제1차 공유재산특위 (13:30)	1.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	